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90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전용기 · 양문석 · 박용갑
김문수 · 강준현 · 김기표
송옥주 · 박선원 · 민병덕
허 영 · 박해철 · 박홍배
손명수 · 서영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7일”은 “14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콘텐츠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콘텐츠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청약철회 등) ① (생략)	제27조(청약철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재화등”은 “콘텐츠”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으로 본다.	② ----- ----- ----- ----- ----- -----. ----- ----- ----- ----- -----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u> <u>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u> <u>의 “7일”은 “14일”로----</u> .